

대학원 의학레이저협동과정 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의학레이저협동과정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학레이저협동과정 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의학레이저협동과정 학과 소속 교수들은 의학레이저협동과정 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논문지도

제4조 (지도교수의 선정)

1. 학생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2. 논문 지도 교수 변경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동의를 있어야 하고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5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1. 면제기준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공통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면제기준조건 및 과목 수 등은 [별첨1]과 같이 진행된다.

제6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응시과목은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을 출제한다.
2.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시행한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출제 및 공동평가 한다.
4.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1.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 외국인 학생의 영어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제5장 학위과정

제8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1.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을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2.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학위논문, 연구논문 중 택1)을 선택하여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출력 후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 (석사학위 과정 취득 자격요건)

1. 학위논문의 경우 33학점 이수(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및 평균 80점이상으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연구논문의 경우 39학점 이수(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이다.

제 10조 (학위논문의 심사)

1. 논문심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석사과정 : 자격시험 → 학위논문작성(연구논문작성) → 예비심사 → 본심 → 통과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자격시험 → 학위논문작성 → 예비심사 → 본심 → 통과

제11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1.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변경한다.

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2조 (의사결정 방식)

1.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1]

응시 과목수	시험 면제 조건	면제과목수	저작 역할	게재인정 일자
석사 : 2 , 박사 : 4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2과목 면제	공동 저자 까지 인정	입학시점~대학원 졸업 후 1년 까지 인정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 논문게재	1과목 면제		
	학술발표	국제 1건당 1과목 면제 국내 2건당 1과목 면제		
	·학과에서 인정하는 업적이 있는 경우			